

2004. Ad Hoc 작성집행

장애여성 Article 신설 촉구문 - 법 적용의 평등에서 법 정립의 평등으로

“장애는 동질적이지 않은 경험을 갖는다. 성과 장애는 더욱 가중된 차별과 기회를 박탈당하게 한다.”

3차 특별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다수의 국가들이 여성인 장애인들이 동질적이지 않은 가중된 차별과 위협에 처해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특정집단에 관한 조항은 마치 그들의 권리가 규정된 조항들에만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오히려 전문과 일반원칙의 역할을 간과하는 것이다.(의미를 약화시키는 관점이다.) 한편 실제로 인권에 관한 조약들의 평등에 관한 일반원칙은 소외된 자들을 광범위하게 보호하지 못했다. 이러한 실제적 경험에 근거하여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개별조약을 만들게 하였다.

많은 나라들에서 입법자나 행정가들, 지역사회 리더들이 보지 못하는 한 집단이 장애여성들이다. 우선 장애여성들은 “장애인”이라는 물성적 틀에 제한 받고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남성도 아니고 그냥 여성도 아닌 “여성인 장애인들”만의 경험은 상대적 집단들에 비해서 국가와 지역의 상황에 따라 때로는 상당히 비참한 상황에 처해있다.

장애여성들의 생애를 인지하고 이에 관한 논의들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1980년 UN에서 개최한 “여성을 위한 10년세계회의”에서부터 1990년 비엔나 세계DPI대회,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 1997년 워싱턴 여성장애인 국제리더쉽포럼, 동아시아 여성포럼, 2003-2012 아태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비와코 새천년 행동계획, 2002년 삿포르 세계DPI대회 등에서 있어왔다. 이러한 국제적 NGO들의 장에서는 장애여성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였다. 그 결과들은 장애여성들 대한 모성권 보호, 은폐되고 있는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와 보호, 동등하게 교육받고 직업을 통하여 인격이 지켜지도록 권고하여 왔다.

그러나 이후 장애여성을 특정하여 지원하는 각국의 사회개발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1980년 이후 24년이 지난 현재까지 많은 나라들에서 장애여성들의 대중적 지위는 향상되지 못하였다. 은폐, 통념에 의한 묵인, 교육과 노동으로부터의 소외 등 여전히 거대한 장벽 속에 놓여있다. 또한 전세계에서 전쟁 등으로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장애를 갖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이들이 아동들을 양육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들의 논의의 결과물들은 윤리적 지침으로 작용할 뿐 법률적 효과를 갖지 못한다. 장애인의 절반임에도 세계의 장애여성들은 이제야 겨우 법률적으로 “장애여성”자체로서 인정되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것이다.

보편적 조약은 법률의 형식을 완결하지만,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편화 시켜주지 못한다.

인권이 전세계의 의제가 되는 21세기에 들어서 입법의 경향은 해석에 의존하는 법 적용의 평등이 선언적 수준이었던 상황을 극복하고, 이미 인식하고 있는 구체적 불평등에 놓여 집단에 대한 특별한 조치와 언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법 정립 단계에서부터 평등이 보장되도록 하는 입법자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의 역사적 의무로서 지금까지 소외되고 잘 보여지지 않았던 장애여성들에 대한 인간존엄성이 적극적으로 실현되도록 장애여성 장(Article)이 신설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첨부) 장애여성에 관한 국제적 논의들

장애여성 Article 신설 촉구문 - 법 적용의 평등에서 법 정립의 평등으로

“장애는 동질적이지 않은 경험을 갖는다. 성과 장애는 더욱 가중된 차별과 기회를 박탈당하게 한다.”

3차 특별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다수의 국가들이 여성인 장애인들이 동질적이지 않은 가중된 차별과 위협에 처해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특정집단에 관한 개별조항을 만드는 것을 두고 그들의 권리가 규정된 조항들에만 제한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은 오히려 전문과 일반원칙의 역할을 간과하는 것이다.(의미를 약화시키는 관점이다.) 한편 실제로 인권에 관한 조약들의 평등에 관한 일반원칙은 소외된 자들을 광범위하게 보호하지 못했다. 이러한 실제적 경험에 근거하여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개별조약을 만들게 하였다.

예) 장애인, 아동, 노인, 장애인 → 장애인.

많은 나라들에서 입법자나 행정가들, 지역사회의 리더들이 보지 못하는 집단중에 하나가 바로 장애여성들이다. 우선 장애여성들은 “장애인”이라는 집단의 틀 속에서 제한 받고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범주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남성도 아니고 여성의 범주로도 이해되지 못하는 소수자중에 소수자인 “여성인 장애인들”만의 경험은 국가와 지역의 상황에 따라 매우 비참한 상황에 처해지곤 한다.

장애여성들의 생애를 인지하고 이에 관한 논의들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1980년 UN에서 개최한 “여성을 위한 10년세계회의”에서부터 1990년 비엔나 세계DPI대회,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 1997년 워싱턴 여성장애인 국제리더쉽포럼, 동아시아 여성포럼, 2003-2012 아태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비와코 새천년 행동계획, 2002년 삿포르 세계DPI대회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러한 국제적 NGO들의 장에서는 장애여성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였다. 그 결과들은 장애여성들 대한 모성권 보호, 은폐되고 있는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와 보호, 동등하게 교육받고 직업을 통하여 인격이 지켜지도록 권고하여 왔다. → 22년째 왜 21년? 생계가 생계인가?

그러나 (이후) 장애여성을 특정하여 지원하는 각국의 사회개발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1980년 이후 24년이 지난 현재까지 많은 나라들에서 장애여성들의 대중적 지위는 향상되지 못하였다. 은폐, 통념에 의한 묵인, 교육과 노동으로부터의 소외 등 여전히 거대한 장벽 속에 놓여있다. 또한 전세계에서 전쟁 등으로 위협이 높아지는 만큼 갈수록 장애를 갖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이 아동들을 양육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동안 국제회의 논의의 결과물들은 윤리적 지침으로 작용할 뿐 법률적 효과를 갖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절반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장애여성들은 이제야 겨우 법률적으로 “장애여성”자체로서 인정되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것이다.

보편적 조약은 법률의 형식을 완결하지만, 실질적으로 평등을 보편화 시켜주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이 전세계의 의제가 되는 21세기에 들어서서 입법의 새로운 경향은 해석에 의존하는 법 적용의 평등이 선언적 수준이었던 상황을 극복하고, 이미 인식하고 있는 구체적 불평등에 놓여 있는 집단에 대한 특별한 조치와 언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법 정립 단계에서부터 평등이 보장되도록 하는 입법자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는 당연한 흐름이기도 하다.

따라서 입법자의 역사적 의무로서 지금까지 소외되고 잘 보여지지 않았던 장애여성들에 대한 인간존엄성이 적극적으로 실현되도록 장애여성 장(Article)을 신설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첨부) 장애여성에 관한 국제적 논의들

<장애여성에 관한 국제적 논의들>

1. 1980년 UN에서 개최한 “여성을 위한 10년”세계회의

- 1) 여성장애인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모든 여성장애인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모든 연령 여성장애인의 상황 개선”에서는 UN 가맹국에서 모든 연령의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명백하게 고려할 것을 요청.
- 3) 여성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촉진하고 여가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여성장애인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고, 유엔가맹국들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회, 직업 재활을 위해 모든 연령의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명백하게 고려할 것을 요청.
 - ▶ 부모교육을 통한 장애 예방.
 - ▶ 적절한 원조, 보호 및 일반적, 직업적, 보건상의 교육 실시
 - ▶ 비전통적인 직업을 포함하여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기술과 훈련시설의 규모 확대.
 - ▶ 장애아동 훈련에 부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족책임을 진 여성장애인이 그러한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가능한 가까운 곳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훈련 시설과 고용 시설의 설치.
 - ▶ 장애인의 가정내의 책임에 관하여 장애인을 지원하고 장애를 가진 어머니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적, 재정적 지원과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
 - ▶ 노동 혹은 훈련, 일상생활에 실제적 참여를 쉽게 할 수 있는 연구조사계획에 있어 특수한 문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촉구.
- 3) 유엔의 자문기관은 모든 연령의 여성장애인의 요구와 예방 및 재활시책을 통한 상황개선의 필요성을 고려할 것과 이 분야에서의 활동을 조정할 것을 요청.
- 4) 평등, 개발, 평화를 위한 유엔 여성의 10년 후반부 행동계획의 실시에 있어 모든 연령의 여성장애인은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으로 충분히 고려하도록 결정.
- 5) 세계장애인의 해에 관련된 장기행동계획의 입안에 있어서 모든 연령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고려할 것을 요청.

2. 1985년 나이로비 제3차 세계여성대회

- 1) 여성장애인에 관한 권리를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각국의 NGO에 여성장애인 문제를 세계적으로 환기시킨 계기가 됨.
- 2) 총372개항의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 중 특별관심분야의 한 부분으로 여성장애인에 관하여 언급.
 - (1) 장애를 발생시키는 많은 요인으로 전 세계의 장애인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여

성임을 강조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가 여전히 제한 받고 있어 “가정과 다른 책임까지 지고 있는 여성장애인에게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지적.(제296조)

▶ 1975년의 장애인권리선언, 1982년 장애인 세계행동계획을 채택하여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 여성장애인이 지역사회를 단위로 한 직업 및 사회참여, 재활조치, 가사책임 수행을 위한 사회 지원 체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노력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 특히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

3. 1990년 비엔나 세계DPI대회

이 대회에서 여성장애인 문제를 주제로 하여 세미나를 열었다. 여기에서 여성장애인에 관한 특별한 조건을 20개 항목으로 만들어 각 국가에 강력히 요청하였다.

4.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

1) 이 대회에서 채택된 행동강령 중의 각 부문인 빈곤, 교육과 훈련, 건강, 폭력, 경제, 힘(power), 인권, 미디어 등에 여성장애인이 고려될 것을 언급되었다.

2) 보다 구체적으로 지정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 여성장애인은 특히 폭력에 취약하다(116항)

▶ 여성장애인이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을 도모해야 한다.(124항)

▶ 여성장애인과 같이 취약한 계층을 위해 적절한 법률을 개발하고 특별조치를 취해야 한다(126항)

▶ 무력분쟁하에서 여성장애인이 다른 취약계층과 함께 인권침해를 받으므로 무력분쟁이 중단되어야 한다.(131항)

▶ 다른 취약계층여성과 함께 장애라는 요소 때문에 여성장애인은 인권에 대한 지각 및 인식의 부족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있다.(225항)

5. 1997년 워싱턴 여성장애인 국제리더쉽 포럼

1) 북경세계여성대회 후속 조치로 미국의 국제장애인연구소(WID)와 미국 정부의 공동 후원으로 6월에 워싱턴에서 열렸으며, 각 국의 여성장애인 600여 명 참석.

2) 전세계 여성장애인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광범위한 사업, 법, 연구, 기관 그리고 발전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기초적 단계에 있는 여성장애인에게 관심을 갖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

3) 포럼의 주요 내용들은 조직적 리더쉽, 교육과 개발, 건강, 가족문제, 폭력, 성(sexuality), 고용전략, 의사소통과 기술, 대중매체와 이미지 등에 관한 것.

7. 2000년 대만 제4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결의문

"We believed that globalization gave some women wider opportunities but we are fully aware of its negative impacts; lowering the labor standards, enforcing 'race to the bottom' and feminization of poverty. We need to consider the situation of rural women, differently abled women, and women with non-paid jobs. Women should use the convenience of wider space and opportunities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ICT) to strengthen their movements."

8. 2003-2012 아태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비와코 새천년 행동계획

1) 행동계획안에는 우선순위실천 영역으로 여성장애인을 포함시키고, 목표와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B. 여성장애인(Women with disabilities)

1. 주요 현안(Critical issues)

19. 여성장애인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 중의 하나로, 여성이라는 위치에서 갖는 다양한 불이익을 받으면서 가장 대표적인 빈곤층이다.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보다 가족내에서 더 많이 차별을 받으며, 보건, 교육, 직업훈련, 고용과 수입발생 기회로부터 차단되어 있으며, 사회와 지역사회 활동들로부터 제외되어 있다.
20. 여성장애인은 보다 더 많은 신체적·성적 학대의 위험, 출산할 권리의 부정, 결혼과 가정생활로 편입할 기회의 감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차별에 직면한다. 농어촌지역의 장애여성들은 높은 문맹률과 정보와 서비스에의 접근의 부족으로 인해 보다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의 낙인과 거부, 그리고 발전을 위한 기회부족의 부정으로 인해, 여성장애인은 자존심과 자부심을 결여한 채로 성장하고 그들의 지역사회로부터 여성의 역할로의 접근을 거부당하게 된다.
21. 몇몇 국가들의 장애인 자조단체들내에서, 여성장애인은 보다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그러한 조직의 회원으로 활동하기도 어려우며, 지도자와 행정가로서의 역할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관심사는 자조단체의 옹호활동에서 제기되지 않으며 젊은 여성장애인은 지도자훈련을 위한 대상이 되어 있지 않다.
22. 비장애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주류의 여성운동은 여성장애인의 삶에 최소한의 영향력만 미쳐왔다. 여성장애인은 주류의 여성단체의 회원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문제를 특별한 관심사항으로 제기되거나 주지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킬 많은 옹호기술이 부족하였다.
23. 정부는 불균형을 바로잡고,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류의 발전에 있어서 여성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2. 목표(Targets)

목표 3. 정부는 2005년까지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반차별적 대책들을 보장해야 한다.

목표 4. 전국적 장애인 자조단체들은 2005년까지 관리, 조직적 훈련, 옹호프로그램을 포함한 그들의 활동에 여성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동등한 대표참여를 증진하는 정책들을 채택해야 한다.

목표 5. 여성장애인은 2005년까지 전국적 주류의 여성단체들의 회원으로 포함되어져야 한다.

9. 2002년 삿뽀로 세계DPI대회

1) 이 대회에서는 여성장애인 토론장을 마련하였고, 잠비아, 뉴질랜드, 독일, 말리, 케냐, 일본, 인도의 여성장애인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여성장애인의 인권”, “성폭력”이라는 주제로 각국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잠비아 ▶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 여성장애인을 아무도 책임지려 없어서 교육받지 못한 채, 사회성도 결여되어 방치되어 살아가고 있음.

▶ 어느 남성이 여성장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소문이 나면 사회적 수치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음.

말리 ▶ 아프리카는 대부분이 농업국가로서 여성은 임출육과 더불어 농업종사로 역할이 규정됨. 장애를 가진 여성은 농업에 종사할 수 없음으로 해서 여성이라는 상징성이 배제되고 존재가 부정되는 경험하게 됨.

뉴질랜드 ▶ 선천성 기형으로 태어났으나, 지속적 관심과 교육, 기술적 지원을 통하여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됨. 그러나 여성으로서의 성역할에 대해 지속적인 의문을 받고 살아옴.

▶ 외모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과 분위기 형성의 필요성 지적.

케냐 ▶ 자신이 여성장애인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임에도, 가부장 사회에서 남성에게 가정적 주도권이 있다보니, 때로 남편에게서 자신의 행동을 감수하라는 의미의 폭언을 듣는다고 하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와 이러한 태도에 대한 사회적 목인을 지적함.

인도 ▶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딸을 어려서부터 사탕으로 유인하여 성폭행한 친아버지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여성장애인의 책임은 가족에게 맡겨지기에 제재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지적함.

▶ 또한 많은 여성장애인이 가족의 그늘 아래에서 빛을 못보고 각종 차별을 받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함.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은폐되어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함.

독일 ▶ 지역내에서의 여성장애인에게 자기방어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이것은 상당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제도적 제안과, 여성장애인들의 커뮤니티가 필요함을 지적.

일본 ▶ 일본에서도 분명히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에 비해 기회제공이 불평등하지만 여성장애인 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함.

특히, 참석한 한 비장애남성은 자신의 딸과 아내가 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됨으로 인해 가족인 자신까지 오랫동안 상당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함.